

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글로벌Top10주식과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2. 변경시행일 : 2023.09.07

3. 정정사항

-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업데이트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[(간이)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	
	아니오	정기갱신	-	-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(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, 운용전문 인력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5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리카레딧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- 유리글로벌Top10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- 증권 대여, 차입 주식 추가 주1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운용 방법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)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의 시장 위험 해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- 증권대차 거래위험 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

<p>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			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아니오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12월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 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- 세액공제 : [납입금액]</p>	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 ※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- 세액공제 : [납입금액]</p>

			<p>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 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<생략>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<신설> - 분리과세한도 <신설>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<신설></p>	<p>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<삭제></p> <p>② <현행 3항과 같음>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</p> <p>- 분리과세한도 -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선택가능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아니오	정기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(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 주식의 매매회전을 등 주석 추가)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아니오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끝>.